
2026 IBK기업은행-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
“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” 사업안내서

I 사업개요

[사업명] 2026 IBK기업은행-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'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'

[사업목적] 위기상황에 놓인 미혼모와 미혼임산부의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혼모자가정의 건강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한다.

[사업기간] 2026년 1월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
[신청대상]

구분	자격기준																					
공통 자격	<p>[신청조건]</p> <p>① 24~25년도 본 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</p> <p>② 신청일 기준 미혼인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이혼의 경우 「민법」 제844조에 의거한 친생자 추정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「민법」 제844조(남편의 친생자의 추정) 기준 】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제844조(남편의 친생자의 추정)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.</p> <p>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17. 10. 31.]</p> <p>[2017. 10. 31.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. 4. 30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</p> </div>																					
	<p>[소득기준]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2026년 기준중위소득 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소득기준</th> <th>기준중위소득 150%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인</td> <td>2,564,238</td> <td>3,846,357</td> </tr> <tr> <td>2인</td> <td>4,199,292</td> <td>6,298,938</td> </tr> <tr> <td>3인</td> <td>5,359,036</td> <td>8,038,554</td> </tr> <tr> <td>4인</td> <td>6,494,738</td> <td>9,742,107</td> </tr> <tr> <td>5인</td> <td>7,556,719</td> <td>11,335,079</td> </tr> <tr> <td>6인</td> <td>8,555,952</td> <td>12,833,92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출처: 보건복지부</p>	구 분	소득기준	기준중위소득 150%	1인	2,564,238	3,846,357	2인	4,199,292	6,298,938	3인	5,359,036	8,038,554	4인	6,494,738	9,742,107	5인	7,556,719	11,335,079	6인	8,555,952	12,833,928
	구 분	소득기준	기준중위소득 150%																			
	1인	2,564,238	3,846,357																			
2인	4,199,292	6,298,938																				
3인	5,359,036	8,038,554																				
4인	6,494,738	9,742,107																				
5인	7,556,719	11,335,079																				
6인	8,555,952	12,833,928																				
<p>[가구유형] ①~③에 해당하는 가정</p> <p>① 긴급지원이 필요한 출산을 앞둔 24주 이상의 미혼임산부</p> <p>②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</p> <p>③ 다문화 미혼모자가정 (*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)</p>																						

II 지원내용

가정 당 최대 200만원의 가정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

※항목별 중복신청 가능, 총 지원금액 내 항목 간 이월가능

1. 지원항목

가. 생계비

지원영역	세부항목	제출서류	제외항목	비고
연체 공공요금	- 미납 가스·수도·전기세 지원	미납고지서	당월납부금	가전제품 노후로 인한 단순 교체 지원불가
가전제품	- 가스레인지/밥솥: 20만원 이하 - 전자레인지 : 10만원 이하 - 냉장고/세탁기 : 60만원 이하	견적서(2건)	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	
식료품 및 생필품	- 회당 50만원 미만으로 결제 제한	-	대량구매	

(지원방식) 공공요금 : 기관 대납(본회-납부기관)

물품 : 기관 직접구입(장바구니)

※기관 직접 구입을 위해 결제 관련정보(ID, PW)를 요청할 수 있음

(지원불가) TV·전화요금, 보험료, 교통비, 의복구입비

나. 양육비

지원영역	세부항목	제출서류	제외항목
출산·양육용품	- 출산 전/후 필요용품 -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	-	고가의 물품, 의복·완구 구매 제한

(지원방식) 기관 직접구입(장바구니)

※기관 직접구입을 위해 결제 관련정보(ID, PW)를 요청할 수 있음

다. 의료비

지원영역	세부항목	제출서류	제외항목	비고
산전·산후진료비	- 국가필수검사항목 - 출산 시 처치/입·퇴원 비용	임신헌인증 의사소견서(진단서) 진료비 영수증	물리치료비 치과치료비 간병인비	산후진료비 최대 100만원 그 외 제한 없음
산후도우미비	국가지원 외 자부담	본인부담영수증		
병원비	진료, 치료, 약제비 등	의사소견서(진단서)		

(지원방식) 기관 대납(본회-의료기관)

※의료비 납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본회가 직접 소통하며

지원사유 및 가정상황을 공유하게 될 수 있음

라. 주거비

지원영역	세부항목	제출서류	제외항목
연체 미납금	임대료, 관리비 미납분 지원	임대차계약서 체납확인서 퇴거통지서 등	당월납부금
이사비용	가구 이사비용 지원	견적서(2건) 임대차계약서	

(지원방식) 기관 대납(본회-납부처)

(지원불가) 보증금, 인테리어비용

마. 심리상담비

지원영역	세부항목	제출서류	제외항목
심리상담	성인/아동 상담·검사·치료비 지원 (온라인 진행 가능)	심리상담소견서 진단서 상담일지 (온라인)상담화면	약제비
심리·정서치료			

(지원방식) 기관 대납(본회-상담기관)

※심리상담비 납부를 위해 상담기관과 본회가 직접 소통하며
지원사유 및 가정상황을 공유하게 될 수 있음

2. 유의사항

- 1)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며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
- 2) 타 기관에서 유사사업 지원 시 심사에서 제외함.
선정 후 지원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함.
- 3) 지원항목에 대하여 환급, 소급 지원 불가(선지출 후지원 불가)
- 4)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, 관련 유관기관에 직접 입금함.
- 5) 선정 후 사전연락 없이 7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됨.
- 6) 모든 지원은 사업기간(~11월) 내 종결 필수

III 신청방법

1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구분	개인신청	기관신청										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신청링크(모두싸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메일신청(withfamily@holt.or.kr) 이메일 신청 시 제목은 아래와 같이 기재 “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신청_000(기관명)” *기관 : 사회복지 유관기관, 시설 등 주민센터는 개인 신청으로 안내										
제출서류	*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											
	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·초상권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⑤ 소득증빙서류 1부(하단 택 1)	① 공문 ② 신청서/추천서/별첨서류 각 1부 ③ 신청자 자격확인서류 각 1부 ④ 개인정보·초상권 동의서 각 1부 (기관 담당자, 신청자 각 1부) ⑤ 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⑥ 기관 통장사본 1부										
	<소득증빙서류 안내>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제출서류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초생활수급대상</td> <td>수급자증명서</td> <td rowspan="3">해당 항목에서 택 1하여 제출</td> </tr> <tr> <td>차상위복지급여대상</td> <td> - 한부모가족증명서 -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-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- 자활근로자 확인서 - 우선돌봄증명서 -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자 증명서 </td> </tr> <tr> <td>일반저소득</td> <td>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제출서류	비고	기초생활수급대상	수급자증명서	해당 항목에서 택 1하여 제출	차상위복지급여대상	- 한부모가족증명서 -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-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- 자활근로자 확인서 - 우선돌봄증명서 -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자 증명서	일반저소득	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구분	제출서류	비고										
기초생활수급대상	수급자증명서	해당 항목에서 택 1하여 제출										
차상위복지급여대상	- 한부모가족증명서 -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-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- 자활근로자 확인서 - 우선돌봄증명서 -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자 증명서											
일반저소득	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											

IV 문의

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 ☎02-331-7083 / family@holt.or.kr

1. 진행절차



2. 세부진행과정



3. 지원금 지급방법

개인신청자		기관신청자	비 고
생계비(물품) 양육비	신청자 필요물품 자율선택 후 기관에서 직접 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홀트(본부,지부,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) → 신청기관으로 입금 	신청자 개인계좌 입금 불가 ※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 바람 02-331-7083
생계비(공공요금)	관련업체 직접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기관 → 관련기관/업체 직접송금 	
주거비			
의료비			
심리상담비			

4. 결과보고

구분	제출일	제출서류	파일명	제출방법
개별결과보고	개별케이스 종결 후 한달 이내	① 결과보고서 ② 만족도조사 ③ 지출내역(PDF) *사진: 원본파일제출	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결과보고_000(기관명)	family@holt.or.kr (기안 제출 불필요)

※제출서류 ①~② 본 회 양식 참고

③ 지출내역은 각 기관별 결의서 양식사용 / 지출내역 일체 하나의 PDF로 취합 후 제출